

## 서울특별시 「기술용역 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 세부기준」 개정

서울특별시 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 세부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3. 26.

서울특별시장

### 서울특별시 「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 세부기준」

#### 1. 개정이유

- 가. 국토해양부 고시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개정('13. 4. 1부터 시행)
  - 당초 고시 내용에 포함되어 있던 평가방법을 발주청별로 제정 운영
  - 유사용역 실적의 과도한 제한금지, 전차용역실적 인정범위 등 개선
- 나. 그동안 제도 운영상 나타난 서울시 평가 기준 미비점 개선·보완
  - SOQ, TP 평가시 책임기술자에 대한 변별력 확보

#### 2. 주요내용

- 가. 유사용역·전차용역 평가방법 개선을 통한 형평성 강화 등
  - 중소기업 진입장벽 해소를 위해 배점차등 축소
- 나. SOQ(기술자평가서), TP(기술제안서) 평가(대형용역)시 참여기술자 변별력 확보
  - 용역수행의 직접적인 제반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기술자에 대한 자질 및 기술력 평가 강화
- 다. 참여감리원에 대한 배점 조정으로 책임기술자의 면접 강화
  - 중소기업의 참여기회 확대 및 기술역량 검증과 평가의 적정성 확보

# 서울특별시 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 세부기준

## (설계·감리 등 건설기술용역 수행능력평가)

### 1. 설계 평가기준

#### 가. 항목별 배점 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비고	
참 여 기 술 자 (50)	사 업 책임기술자 (18)	자 격	4	
		경 력	6	
		유사용역실적	6	
		기술능력	1	
		업무관리능력	1	
	분 야 별 책임기술자 (22)	자 격	5	
		경 력	8	
		유사용역실적	9	
	분 야 별 참여기술자 (8)	자 격	2	
		경 력	3	
		유사용역실적	3	
	교육훈련, 전차용역 수행실적 (2)	교육훈련	1	
전차용역수행실적		1		
유사용역 수행실적 (15)	회사실적 (15)	실적건수	7	
		실적금액	7	
		전차용역수행실적	1	
신 용 도 (10)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부실벌점 등	지정기간, 부과벌점	7	
	재정상태 건설도	신용평가등급	3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5)	개발실적		2	
	활용실적		3	
	투자실적		10	
업 무 중 첩 도 (10)	사업책임기술자		4	
	분야별책임기술자		6	
합 계		100		

나. 항목별 세부 배점기준

평가항목			평가방법	배점	점수계산방법				
참여자 기술자 (50)	사업 책임기술자 (18)	자격	절대평가	4	특 급	고 급	중 급	초 급	
					4	3	2	1	
		경력	절대평가	6	20년 이상	20년 미만 ~ 18년 이상	18년 미만 ~ 16년 이상	16년 미만 ~ 14년 이상	14년 미만
					6	5.7	5.4	5.1	4.8
		유사용역 실적	절대평가	6	10건 이상	10건 미만 ~ 8건 이상	8건 미만 ~ 8건 이상	6건 미만 ~ 4건 이상	4건 미만
				6	5.7	5.4	5.1	4.8	
	기술능력	상대평가	1	수	우	미	양	가	
				1.0	0.8	0.6	0.4	0.2	
	업무관리 능력	상대평가	1	수	우	미	양	가	
				1.0	0.8	0.6	0.4	0.2	
	분야별 책임기술자 (22)	자격	절대평가	5	특 급	고 급	중 급	초 급	
					5	4	3	2	
		경력	절대평가	8	15년 이상	15년 미만 ~ 13년 이상	13년 미만 ~ 11년 이상	11년 미만 ~ 9년 이상	9년 미만
				8	7.6	7.2	6.8	6.4	
	유사용역 실적	절대평가	9	7건 이상	7건 미만 ~ 6건 이상	6건 미만 ~ 5건 이상	5건 미만 ~ 4건 이상	4건 미만	
				9	8.5	8.0	7.5	6.0	
	분야별 참여자 기술자 (8)	자격	절대평가	2	특급·고급		중급	초급	
					2	1.6	1.2		
		경력	절대평가	3	10년 이상	10년 미만 ~ 8년 이상	8년 미만 ~ 6년 이상	6년 미만 ~ 4년 이상	4년 미만
				3	2.8	2.6	2.4	2.2	
유사용역 실적	절대평가	3	5건 이상	5건 미만 ~ 4건 이상	4건 미만 ~ 3건 이상	3건 미만 ~ 2건 이상	2건 미만		
			3	2.8	2.6	2.4	2.2		
교육훈련, 전차용역 수행실적 (2)	교육훈련	절대평가	1	- 참여건설기술자가 최근 3년간 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 이수 인원 / 평가 대상 인원) × 1점 · 1주 이상 2주 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 이수 인원 / 평가 대상 인원) × 0.5점					
	전차용역 수행실적	절대평가	1	구분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사업 책임기술자	0.5	0.4	0.3	0	
			분야별 책임기술자	0.5	0.4	0.3	0		
* 사업책임기술자(0.5점), 분야별책임기술자(0.5점)									

평 가 항 목		평가 방법	배 점	점 수 계 산 방 법																											
유사용역 수행실적 (15)	회사실적	실적건수	절대 평가	7	2건 이상		2건 미만 ~ 1건 이상	1건 미만																							
					7		6.3		5.6																						
		실적금액	절대 평가	7	35억 이상	35억미만 ~ 30억이상		30억미만 ~ 20억이상	20억 미만																						
					7	6.3		5.6	4.9																						
		전차용역 수행실적	절대 평가	1	용역 후 3년 이내 (해당업체)		해당업체 외 모든 참여업체																								
					1		0.8																								
※ 공동도급시 계산 예 : 0.8 + 0.2 × (전차용역시 지분율 × 입찰시 지분율)																															
신 용 도 (10)	입찰참가 제한 업무정지, 부실벌점 등	지정기간, 부과벌점	절대 평가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역업자가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li> <li>· 참여건설기술자가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 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li> <li>· 참여업체 및 참여건설기술자가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규칙 제28조에 따라 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동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li> </ul> ※ 점수계산방법은 참여업체 및 참여건설기술자의 누계 평균 벌점에 따라 감점																										
	재정상태 건설도	신용평가 등급	절대 평가	3	-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회사채</td> <td>A-이상</td> <td>A-미만 BBB-이상</td> <td>BBB-미만 B-이상</td> <td>CCC+ 이하</td> <td>미제출</td> </tr> <tr> <td>기업어음</td> <td>A2-이상</td> <td>A2-미만 A3-이상</td> <td>A3-미만 B-이상</td> <td>C이하</td> <td>미제출</td> </tr> <tr> <td>기업신용</td> <td>A-이상</td> <td>A-미만 BBB-이상</td> <td>BBB-미만 B-이상</td> <td>CCC+ 이하</td> <td>미제출</td> </tr> <tr> <td>점수</td> <td>3.0</td> <td>2.7</td> <td>2.4</td> <td>2.1</td> <td>0</td> </tr> </table>				회사채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2-이상	A2-미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점수	3.0	2.7	2.4	2.1
회사채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2-이상	A2-미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점수	3.0	2.7	2.4	2.1	0																										

평 가 항 목		평가 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5)	개발실적	절대 평가	2	<p>1)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 (등록유지 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신기술 : 건당 1점</li> <li>-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건당 0.6점</li> <li>-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li> </ul> <p>※ 경과기간에 따라 가중치 부여</p>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head> <tr> <th>구분</th> <th>5년 미만</th> <th>5년 이상 10년 미만</th> <th>10년 이상 20년 미만</th> </tr> </thead> <tbody> <tr> <td>특허</td> <td>100%</td> <td>80%</td> <td>60%</td> </tr> <tr> <td>실용신안</td> <td>100%</td> <td>80%</td> <td>-</td> </tr> </tbody> </table> <p>2) 위 1)의 기술개발실적이 동일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p> <p>3) 위 1)의 기술개발 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p>	구분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특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구분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특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활용실적	절대 평가	3	<p>1)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시공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절대평가</p> <p>2)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용역업자가 보호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공사에 반영되어 실제 활용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p> <p>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최초 출원인이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고 공사에 반영되어 실제 활용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단, 특허,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신기술 : 1.0점/건</li> <li>-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li> <li>-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li> </ul> <p>※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p>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head> <tr> <th rowspan="2">구 분</th> <th colspan="5">가 중 치</th> </tr> <tr> <th>1.0</th> <th>0.9</th> <th>0.8</th> <th>0.7</th> <th>0.6</th> </tr> </thead> <tbody> <tr> <td>활용건수 (건)</td> <td>5 이상</td> <td>5 미만 4 이상</td> <td>4 미만 3 이상</td> <td>3 미만 2 이상</td> <td>2 미만 1 이상</td> </tr> <tr> <td>활용금액 (억원)</td> <td>20 이상</td> <td>20 미만 18 이상</td> <td>18 미만 16 이상</td> <td>16 미만 14 이상</td> <td>14 미만 12 이상</td> </tr> </tbody> </table> <p>*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p>	구 분	가 중 치					1.0	0.9	0.8	0.7	0.6	활용건수 (건)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활용금액 (억원)	20 이상	20 미만 18 이상	18 미만 16 이상	16 미만 14 이상	14 미만 12 이상
구 분	가 중 치																									
	1.0	0.9	0.8	0.7	0.6																					
활용건수 (건)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활용금액 (억원)	20 이상	20 미만 18 이상	18 미만 16 이상	16 미만 14 이상	14 미만 12 이상																					

평가항목		평가방법	배점	점수계산방법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5)	투자실적	절대 평가	10	1) 최근 3년 간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 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 투자액 / 건설부문 총 매출액)						
				<table border="1"> <tr> <td>30%이상</td> <td>3% 미만 ~2.5% 이상</td> <td>2.5% 미만 ~2% 이상</td> <td>2% 미만 ~1.5% 이상</td> <td>1.5 미만 ~1% 이상</td> </tr> <tr> <td>10.0</td> <td>9.0</td> <td>8.0</td> <td>7.0</td> <td>6.0</td> </tr> </table>	30%이상	3% 미만 ~2.5% 이상	2.5% 미만 ~2% 이상	2% 미만 ~1.5% 이상	1.5 미만 ~1% 이상	10.0
30%이상	3% 미만 ~2.5% 이상	2.5% 미만 ~2% 이상	2% 미만 ~1.5% 이상	1.5 미만 ~1% 이상						
10.0	9.0	8.0	7.0	6.0						
업 무 중 첩 도 (10)	사업책임기술자	절대 평가	4	- 용역간에 대한 중복 비율(=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 기간 합계 / 해당 용역기간 × 100)에 따라 평가						
	분야별책임기술자	절대 평가	6	- 용역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 기간 합계 / 해당용역기간 × 100)에 따라 평가						
합 계			100							

## 2. 감리 평가기준

### 가. 항목별 배점 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비고
참 여 감 리 원 (50)	책임감리원 (25)	등 급	부적격 시 실격
		경 력	15(10)
		실 적	9
		교육훈련	1
		면접 발표	(5)
	보조감리원 (15)	자 격	부적격 시 실격
		경 력	9
		실 적	5
		교육훈련	1
	기술지원감리원 (10)	등 급	3
		경 력	6
		교육훈련	1
유사용역수행실적 (10)	회사실적	10	
신 용 도 (15)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지정기간	7
	부실벌점	부과기간	5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평가등급	3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	개발실적	3	
	투자실적	7	
업 중 무도 첩 (5)	상주감리원	3	
	비상주감리원	2	
교체빈도 (10)	감리전문회사	5	
	참여감리원	5	
합 계		100	
가점	공사비 절감기여 감리원	0.2	
감점	부패행위 관련자	10	

비고

- ( ) 의 배점은 책임감리원 면접을 평가하는 경우(기술자평가서 평가 또는 기술제안서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적용

나. 항목별 세부 배점기준

평가 항목	평가 요소	배 점	점 수 계 산 방 법																																				
가. 참여감리원 (50)	(1)책임감리원	25	○ 책임감리 대상공사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 각호에 의한 책임감리원의 경력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 함																																				
	(가) 해당 분야 경력	15 (10)																																					
			<table border="1"> <thead> <tr> <th>해당 공사규모</th> <th colspan="5">설계, 시공, 시험, 검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기술자문 경력 (단위 : 년)</th> </tr> </thead> <tbody> <tr> <td>1,000억원 이상</td> <td>11 이상</td> <td>11 미만 9 이상</td> <td>9 미만 8 이상</td> <td>8 미만 7 이상</td> <td>7 미만</td> </tr> <tr> <td>1,000억원 미만 500억원 이상</td> <td>9 이상</td> <td>9 미만 7 이상</td> <td>7 미만 6 이상</td> <td>6 미만 5 이상</td> <td>5 미만</td> </tr> <tr> <td>5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td> <td>7 이상</td> <td>7 미만 5 이상</td> <td>5 미만 4 이상</td> <td>4 미만 3 이상</td> <td>3 미만</td> </tr> <tr> <td>300억원 미만</td> <td>5 이상</td> <td>5 미만 3 이상</td> <td>3 미만 2 이상</td> <td>2 미만 1 이상</td> <td>1 미만</td> </tr> <tr> <td>점수</td> <td>15(10)</td> <td>13.5(9)</td> <td>12(8)</td> <td>10.5(7)</td> <td>9(6)</td> </tr> </tbody> </table>	해당 공사규모	설계, 시공, 시험, 검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기술자문 경력 (단위 : 년)					1,000억원 이상	11 이상	11 미만 9 이상	9 미만 8 이상	8 미만 7 이상	7 미만	1,000억원 미만 500억원 이상	9 이상	9 미만 7 이상	7 미만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5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	7 이상	7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300억원 미만	5 이상	5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1 미만	점수	15(10)	13.5(9)	12(8)	10.5(7)	9(6)
해당 공사규모	설계, 시공, 시험, 검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기술자문 경력 (단위 : 년)																																						
1,000억원 이상	11 이상	11 미만 9 이상	9 미만 8 이상	8 미만 7 이상	7 미만																																		
1,000억원 미만 500억원 이상	9 이상	9 미만 7 이상	7 미만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5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	7 이상	7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300억원 미만	5 이상	5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1 미만																																		
점수	15(10)	13.5(9)	12(8)	10.5(7)	9(6)																																		
			※( )의 배점은 책임감리원 면접을 평가하는 경우 적용																																				
	(나) 직무 분야 실적	9	1) 설계, 시공, 시험, 검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기술자문 (6점)																																				
	<table border="1"> <thead> <tr> <th>등 급</th> <th colspan="5">점 수 (단위 : 년)</th> </tr> </thead> <tbody> <tr> <td>수석감리사</td> <td>15 이상</td> <td>15 미만 13 이상</td> <td>13 미만 11 이상</td> <td>11 미만 9 이상</td> <td>9 미만</td> </tr> <tr> <td>감리사</td> <td>12 이상</td> <td>12 미만 10 이상</td> <td>10 미만 8 이상</td> <td>8 미만 6 이상</td> <td>6 미만</td> </tr> <tr> <td>점수</td> <td>6</td> <td>5.7</td> <td>5.4</td> <td>5.1</td> <td>4.8</td> </tr> </tbody> </table>			등 급	점 수 (단위 : 년)					수석감리사	15 이상	15 미만 13 이상	13 미만 11 이상	11 미만 9 이상	9 미만	감리사	12 이상	12 미만 10 이상	10 미만 8 이상	8 미만 6 이상	6 미만	점수	6	5.7	5.4	5.1	4.8												
등 급	점 수 (단위 : 년)																																						
수석감리사	15 이상	15 미만 13 이상	13 미만 11 이상	11 미만 9 이상	9 미만																																		
감리사	12 이상	12 미만 10 이상	10 미만 8 이상	8 미만 6 이상	6 미만																																		
점수	6	5.7	5.4	5.1	4.8																																		

평가 항목	평가 요소	배 점	점 수 계 산 방 법																								
가. 참여감리원 (50)	(나)직무 분야 실적	1	2) 시공, 시험, 검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기술자문 (3점)																								
			<table border="1"> <thead> <tr> <th>등 급</th> <th colspan="5">점 수 (단위 : 년)</th> </tr> </thead> <tbody> <tr> <td>수석감리사</td> <td>7이상</td> <td>7미만 5이상</td> <td>5미만 3이상</td> <td>3미만 2이상</td> <td>2미만</td> </tr> <tr> <td>감 리 사</td> <td>5이상</td> <td>5미만 4이상</td> <td>4미만 3이상</td> <td>3미만 2이상</td> <td>2년 미만</td> </tr> <tr> <td>점 수</td> <td>3</td> <td>2.8</td> <td>2.6</td> <td>2.4</td> <td>2.2</td> </tr> </tbody> </table>	등 급	점 수 (단위 : 년)					수석감리사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감 리 사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년 미만	점 수	3	2.8	2.6	2.4	2.2
	등 급		점 수 (단위 : 년)																								
수석감리사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감 리 사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년 미만																						
점 수	3	2.8	2.6	2.4	2.2																						
	(다)교육 훈련	<p>○ 책임감리원이 최근 3년간 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 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p> <p>1) 교육훈련</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2주 이상</th> <th>1주 이상 2주 미만</th> </tr> </thead> <tbody> <tr> <td>점수</td> <td>0.5</td> <td>0.3</td> </tr> </tbody> </table> <p>2) 기술자격</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기술사건축사</th> <th>기사</th> <th>산업기사</th> </tr> </thead> <tbody> <tr> <td>점수</td> <td>0.5</td> <td>0.3</td> <td>0.1</td> </tr> </tbody> </table>	구분	2주 이상	1주 이상 2주 미만	점수	0.5	0.3	구분	기술사건축사	기사	산업기사	점수	0.5	0.3	0.1											
구분	2주 이상	1주 이상 2주 미만																									
점수	0.5	0.3																									
구분	기술사건축사	기사	산업기사																								
점수	0.5	0.3	0.1																								
	(라)면접 발표	(5)	<p>○ 책임감리원의 업무수행능력, 자질검증을 위한 면접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점수산정방법 : 각 항목별 점수에 다음 계수를 곱하여 합계 [ 수 : 1.0, 우 : 0.9, 미 : 0.8, 양 : 0.7, 가 : 0.6, 미제출미참석 : 0 ]</li> <li>- 책임감리원으로서의 업무수행능력 : 2점</li> <li>- 책임감리원이 갖추어야 할 자질, 청렴도 등 : 3점</li> <li>- 불법 하도급 감독소홀 책임감리원(부실감리원)은 항목별 배점에 가등급(60%) 적용 [건설분야 하도급 불공정행위 근절대책(시장방침 제459호, '10.10.30.) 이행 관련]</li> </ul> <p>※ 책임감리원 면접평가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항에 따른 기술자평가 및 기술제안서평가 대상 이외의 용역에 대하여 적용</p>																								

평가 항목	평가 요소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가. 참여 감리원	(2)보조 감리원	15	<p>○ 해당 감리용역의 특성 및 총공사비등을 감안하여 평가대상감리원의 인원수 및 감리원 등급을 결정하여 발주부서의 장이 입찰공고시 제시</p> <table border="1"> <thead> <tr> <th>해당공사규모</th> <th colspan="5">설계, 시공, 시험, 검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기술자문 경력 (단위: 월)</th> </tr> </thead> <tbody> <tr> <td>300억원 이상</td> <td>34이상</td> <td>34미만~30이상</td> <td>30미만~26이상</td> <td>26미만~22이상</td> <td>22미만</td> </tr> <tr> <td>300억원 미만 ~ 100억원 이상</td> <td>26이상</td> <td>26미만~21이상</td> <td>21미만~16이상</td> <td>16미만~10이상</td> <td>10미만</td> </tr> <tr> <td>100억원 미만</td> <td>20이상</td> <td>20미만~15이상</td> <td>15미만~10이상</td> <td>10미만~5이상</td> <td>5미만</td> </tr> <tr> <td>점 수</td> <td>9</td> <td>8.1</td> <td>7.2</td> <td>6.3</td> <td>5.4</td> </tr> </tbody> </table>						해당공사규모	설계, 시공, 시험, 검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기술자문 경력 (단위: 월)					300억원 이상	34이상	34미만~30이상	30미만~26이상	26미만~22이상	22미만	300억원 미만 ~ 100억원 이상	26이상	26미만~21이상	21미만~16이상	16미만~10이상	10미만	100억원 미만	20이상	20미만~15이상	15미만~10이상	10미만~5이상	5미만	점 수	9	8.1	7.2	6.3	5.4								
									해당공사규모	설계, 시공, 시험, 검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기술자문 경력 (단위: 월)																																				
									300억원 이상	34이상	34미만~30이상	30미만~26이상	26미만~22이상	22미만																																
									300억원 미만 ~ 100억원 이상	26이상	26미만~21이상	21미만~16이상	16미만~10이상	10미만																																
									100억원 미만	20이상	20미만~15이상	15미만~10이상	10미만~5이상	5미만																																
	점 수	9	8.1	7.2	6.3	5.4																																								
	(가)해당 분야 경력	9	<p>○ 설계, 시공, 시험, 검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기술자문 (3점)</p> <table border="1"> <thead> <tr> <th>등 급</th> <th colspan="5">점 수 (단위: 년)</th> </tr> </thead> <tbody> <tr> <td>수석감리사</td> <td>9이상</td> <td>9미만~7이상</td> <td>7미만~6이상</td> <td>6미만~5이상</td> <td>5미만</td> </tr> <tr> <td>감 리 사</td> <td>7이상</td> <td>7미만~5이상</td> <td>5미만~4이상</td> <td>4미만~3이상</td> <td>3미만</td> </tr> <tr> <td>감 리 사 보</td> <td>6이상</td> <td>6미만~4이상</td> <td>4미만~3이상</td> <td>3미만~2이상</td> <td>2미만</td> </tr> <tr> <td>점 수</td> <td>3.0</td> <td>2.7</td> <td>2.4</td> <td>2.1</td> <td>1.8</td> </tr> </tbody> </table>						등 급	점 수 (단위: 년)					수석감리사	9이상	9미만~7이상	7미만~6이상	6미만~5이상	5미만	감 리 사	7이상	7미만~5이상	5미만~4이상	4미만~3이상	3미만	감 리 사 보	6이상	6미만~4이상	4미만~3이상	3미만~2이상	2미만	점 수	3.0	2.7	2.4	2.1	1.8								
									등 급	점 수 (단위: 년)																																				
									수석감리사	9이상	9미만~7이상	7미만~6이상	6미만~5이상	5미만																																
									감 리 사	7이상	7미만~5이상	5미만~4이상	4미만~3이상	3미만																																
감 리 사 보									6이상	6미만~4이상	4미만~3이상	3미만~2이상	2미만																																	
점 수	3.0	2.7	2.4	2.1	1.8																																									
(나)직무 분야 실적	5	<p>○ 시공, 시험, 검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기술자문 (2점)</p> <table border="1"> <thead> <tr> <th>등 급</th> <th colspan="5">점 수 (단위: 년)</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수석감리사</td> <td>4이상</td> <td>4미만~3이상</td> <td>3미만~2이상</td> <td>2미만~1이상</td> <td>1미만</td> </tr> <tr> <td>2.0</td> <td>1.8</td> <td>1.6</td> <td>1.4</td> <td>1.2</td> </tr> <tr> <td rowspan="2">감 리 사</td> <td>3이상</td> <td>3미만~2이상</td> <td>2미만~1이상</td> <td>1미만</td> <td></td> </tr> <tr> <td>2.0</td> <td>1.8</td> <td>1.6</td> <td>1.4</td> <td></td> </tr> <tr> <td rowspan="2">감 리 사 보</td> <td colspan="2">2이상</td> <td colspan="3">2미만</td> </tr> <tr> <td colspan="2">2.0</td> <td colspan="3">1.8</td> </tr> </tbody> </table>						등 급	점 수 (단위: 년)					수석감리사	4이상	4미만~3이상	3미만~2이상	2미만~1이상	1미만	2.0	1.8	1.6	1.4	1.2	감 리 사	3이상	3미만~2이상	2미만~1이상	1미만		2.0	1.8	1.6	1.4		감 리 사 보	2이상		2미만			2.0		1.8		
								등 급	점 수 (단위: 년)																																					
								수석감리사	4이상	4미만~3이상	3미만~2이상	2미만~1이상	1미만																																	
									2.0	1.8	1.6	1.4	1.2																																	
								감 리 사	3이상	3미만~2이상	2미만~1이상	1미만																																		
2.0	1.8	1.6	1.4																																											
감 리 사 보	2이상		2미만																																											
	2.0		1.8																																											
(다)교육 훈련	1	<p>○ 보조감리원이 최근 3년간 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적용 (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2주 이상</th> <th>1주 이상 2주 미만</th> </tr> </thead> <tbody> <tr> <td>점수</td> <td>1</td> <td>0.5</td> </tr> </tbody> </table>						구분	2주 이상	1주 이상 2주 미만	점수	1	0.5																																	
								구분	2주 이상	1주 이상 2주 미만																																				
								점수	1	0.5																																				

평가 항목	평가 요소	배 점	점 수 계 산 방 법																		
가. 참여감리원	(3)기술지원감리원	10																			
									(가) 등급	3	해당 공사규모		등 급 (점수)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	수석감리사		감리사 이하							
												3	2								
	총공사비 300억원 미만	감리사 이상		감리사보																	
		3	2																		
	(나) 해당 분야 경력	6	해당 공사규모																		
			설계, 시공, 시험, 검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기술자문 경력 (단위 : 년)																		
			1,000억원 이상	15이상	15미만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1,000억원 미만 500억원 이상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00억원 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점수		6	5.7	5.4	5.1	4.8														
	(다) 교육 훈련	1	<p>○ 기술지원감리원이 최근 3년간 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 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기준에 따라 적용(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p> <p>1) 교육훈련</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2주 이상</th> <th>1주 이상 2주 미만</th> </tr> </thead> <tbody> <tr> <td>점수</td> <td>0.5</td> <td>0.3</td> </tr> </tbody> </table> <p>2) 기술자격</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기술사건축사</th> <th>기사</th> <th>산업기사</th> </tr> </thead> <tbody> <tr> <td>점수</td> <td>0.5</td> <td>0.3</td> <td>0.1</td> </tr> </tbody> </table>						구분	2주 이상	1주 이상 2주 미만	점수	0.5	0.3	구분	기술사건축사	기사	산업기사	점수	0.5	0.3
구분			2주 이상	1주 이상 2주 미만																	
점수			0.5	0.3																	
구분			기술사건축사	기사	산업기사																
점수	0.5	0.3	0.1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점수계산방법																																																																																																
나. 유사용역수행실적 (10)	(1) 감리전문회사실적	10	<p>1)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감리용역을 준공(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중에 해당 감리기간 동안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 하였거나 수행 중(전체 감리기간 중 최근 3년 간에 실제 감리를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인 실적을 인정</p> <p>2) 산정방법: 책임시공검측 감리실적×1.0+건축법·주택법상 감리실적×0.7</p> <p>3) 해당 공사의 주된 공종이 토목공사인 경우 (10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해당공사규모</th> <th colspan="5">감리용역 수행실적 (단위: 억원)</th> </tr> </thead> <tbody> <tr> <td>3,000억원이상</td> <td>80이상</td> <td>80미만 70이상</td> <td>70미만 60이상</td> <td>60미만 50이상</td> <td>50미만</td> </tr> <tr> <td>3,000억원미만 2,000억원이상</td> <td>60이상</td> <td>60미만 55이상</td> <td>55미만 50이상</td> <td>50미만 45이상</td> <td>45미만</td> </tr> <tr> <td>2,000억원미만 1,000억원이상</td> <td>50이상</td> <td>50미만 45이상</td> <td>45미만 40이상</td> <td>40미만 35이상</td> <td>35미만</td> </tr> <tr> <td>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td> <td>40이상</td> <td>40미만 35이상</td> <td>35미만 30이상</td> <td>30미만 25이상</td> <td>25미만</td> </tr> <tr> <td>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td> <td>30이상</td> <td>30미만 25이상</td> <td>25미만 20이상</td> <td>20미만 15이상</td> <td>15미만</td> </tr> <tr> <td>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td> <td>20이상</td> <td>20미만 15이상</td> <td>15미만 10이상</td> <td>10미만 5이상</td> <td>5미만</td> </tr> <tr> <td>100억원미만</td> <td>10이상</td> <td>10미만 8이상</td> <td>8미만 6이상</td> <td>6미만 4이상</td> <td>4미만</td> </tr> <tr> <td><b>점수</b></td> <td>10</td> <td>9.8</td> <td>9.6</td> <td>9.4</td> <td>9.2</td> </tr> </tbody> </table> <p>4) 해당 공사의 주된 공종이 건축공사인 경우 (10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해당공사규모</th> <th colspan="5">감리용역 수행실적 (단위: 억원)</th> </tr> </thead> <tbody> <tr> <td>1,000억원이상</td> <td>30이상</td> <td>30미만 25이상</td> <td>25미만 20이상</td> <td>20미만 15이상</td> <td>15미만</td> </tr> <tr> <td>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td> <td>25이상</td> <td>25미만 20이상</td> <td>20미만 15이상</td> <td>15미만 10이상</td> <td>10미만</td> </tr> <tr> <td>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td> <td>20이상</td> <td>20미만 15이상</td> <td>15미만 10이상</td> <td>10미만 5이상</td> <td>5미만</td> </tr> <tr> <td>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td> <td>15이상</td> <td>15미만 11이상</td> <td>11미만 7이상</td> <td>7미만 4이상</td> <td>4미만</td> </tr> <tr> <td>100억원미만</td> <td>10이상</td> <td>10미만 7이상</td> <td>7미만 4이상</td> <td>4미만 2이상</td> <td>2미만</td> </tr> <tr> <td><b>점수</b></td> <td>10</td> <td>9.8</td> <td>9.6</td> <td>9.4</td> <td>9.2</td> </tr> </tbody> </table> <p>5) 해당 공사가 복합공종 공사이거나 주된 공종이 설비공사인 경우에는 발주부서에서 위 3)과 4)를 참고하여 감리용역수행실적을 작성(10점)</p>	해당공사규모	감리용역 수행실적 (단위: 억원)					3,000억원이상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3,000억원미만 2,000억원이상	60이상	60미만 55이상	55미만 50이상	50미만 45이상	45미만	2,000억원미만 1,000억원이상	50이상	50미만 45이상	45미만 40이상	40미만 35이상	35미만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40이상	40미만 35이상	35미만 30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30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10이상	10미만 5이상	5미만	100억원미만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4이상	4미만	<b>점수</b>	10	9.8	9.6	9.4	9.2	해당공사규모	감리용역 수행실적 (단위: 억원)					1,000억원이상	30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10이상	10미만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10이상	10미만 5이상	5미만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15이상	15미만 11이상	11미만 7이상	7미만 4이상	4미만	100억원미만	10이상	10미만 7이상	7미만 4이상	4미만 2이상	2미만	<b>점수</b>	10	9.8	9.6	9.4	9.2
			해당공사규모	감리용역 수행실적 (단위: 억원)																																																																																															
			3,000억원이상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3,000억원미만 2,000억원이상	60이상	60미만 55이상	55미만 50이상	50미만 45이상	45미만																																																																																											
			2,000억원미만 1,000억원이상	50이상	50미만 45이상	45미만 40이상	40미만 35이상	35미만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40이상	40미만 35이상	35미만 30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30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10이상	10미만 5이상	5미만																																																																																											
			100억원미만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4이상	4미만																																																																																											
			<b>점수</b>	10	9.8	9.6	9.4	9.2																																																																																											
해당공사규모	감리용역 수행실적 (단위: 억원)																																																																																																		
1,000억원이상	30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10이상	10미만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10이상	10미만 5이상	5미만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15이상	15미만 11이상	11미만 7이상	7미만 4이상	4미만																																																																																														
100억원미만	10이상	10미만 7이상	7미만 4이상	4미만 2이상	2미만																																																																																														
<b>점수</b>	10	9.8	9.6	9.4	9.2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점수계산방법																																											
다. 신용도 (15)	(1)입찰 참가 제한, 업무 정지	7	<p>1) 감리전문회사(대표자 포함)가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p> <p>2) 참여감리원이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 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p>																																											
	(2)벌점	5	<p>1) 감리전문회사가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동 규정(별표10)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p> <p>2) 참여감리원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동 규정(별표10)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p>																																											
	(3)재정 상태 건설도	3	<p>1) 재정상태 건설도는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한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점수</th> <th>회사채의 신용평가등급</th> <th>기업어음의 신용평가등급</th> <th>기업 신용평가등급</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5">3.0</td> <td>AAA</td> <td>-</td> <td>(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td> </tr> <tr> <td>AA+, AA0, AA-</td> <td>A1</td> <td>(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td> </tr> <tr> <td>A+</td> <td>A2+</td> <td>(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td> </tr> <tr> <td>A0</td> <td>A20</td> <td>(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td> </tr> <tr> <td>A-</td> <td>A2-</td> <td>(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td> </tr> <tr> <td rowspan="3">2.7</td> <td>BBB+</td> <td>A3+</td> <td>(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td> </tr> <tr> <td>BBB0</td> <td>A30</td> <td>(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td> </tr> <tr> <td>BBB-</td> <td>A3-</td> <td>(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td> </tr> <tr> <td rowspan="3">2.4</td> <td>BB+, BB0</td> <td>B+</td> <td>(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td> </tr> <tr> <td>BB-</td> <td>B0</td> <td>(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td> </tr> <tr> <td>B+, B0, B-</td> <td>B-</td> <td>(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td> </tr> <tr> <td>2.1</td> <td>CCC+이하</td> <td>C 이하</td> <td>(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 이하에 준하는 등급)</td> </tr> </tbody> </table>	점수	회사채의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의 신용평가등급	기업 신용평가등급	3.0	AAA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2.7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4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1	CCC+이하	C 이하
점수	회사채의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의 신용평가등급	기업 신용평가등급																																											
3.0	AAA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2.7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4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1	CCC+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 이하에 준하는 등급)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점수계산방법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	(1)개발 실적	3	<p>1)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을 받거나 선 등록된 실용신안으로 등록유지결정(최초 출원인이 등록결정 또는 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사용실적이 있는 경우에 인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신기술 : 건당 1점</li> <li>-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건당 0.6점</li> <li>-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건당 0.3점</li> </ul> <p>○ 건설신기술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 부여</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구 분</th> <th colspan="5">가 중 치</th> </tr> <tr> <th>1.0</th> <th>0.9</th> <th>0.8</th> <th>0.7</th> <th>0.6</th> </tr> </thead> <tbody> <tr> <td>실적건수 (건)</td> <td>5이상</td> <td>5미만 4이상</td> <td>4미만 3이상</td> <td>3미만 2이상</td> <td>2미만 1이상</td> </tr> <tr> <td>실적금액 (억원)</td> <td>20이상</td> <td>20미만 18이상</td> <td>18미만 16이상</td> <td>16미만 14이상</td> <td>14미만 12이상</td> </tr> </tbody> </table> <p>※ 위 실적건수와 실적금액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인정</p> <p>○ 특허,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 가중치 부여</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 분</th> <th>5년 미만</th> <th>5년 이상 10년 미만</th> <th>10년 이상 20년 미만</th> </tr> </thead> <tbody> <tr> <td>특 허</td> <td>100%</td> <td>80%</td> <td>60%</td> </tr> <tr> <td>실용신안</td> <td>100%</td> <td>80%</td> <td>-</td> </tr> </tbody> </table> <p>2) 위 1)의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p> <p>3) 위 1)의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p>	구 분	가 중 치					1.0	0.9	0.8	0.7	0.6	실적건수 (건)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실적금액 (억원)	20이상	20미만 18이상	18미만 16이상	16미만 14이상	14미만 12이상	구 분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구 분	가 중 치																																				
1.0		0.9	0.8	0.7	0.6																																	
실적건수 (건)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실적금액 (억원)	20이상	20미만 18이상	18미만 16이상	16미만 14이상	14미만 12이상																																	
구 분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2) 투자 실적	7	<p>○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 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 분</th> <th>3% 이상</th> <th>3.0% 미만 2.5% 이상</th> <th>2.5% 미만 2.0% 이상</th> <th>2.0% 미만 1.5% 이상</th> <th>1.5% 미만 1.0% 이상</th> <th>1.0% 미만</th> </tr> </thead> <tbody> <tr> <td>점수</td> <td>7.0</td> <td>6.8</td> <td>6.6</td> <td>6.4</td> <td>6.2</td> <td>6.0</td> </tr> </tbody> </table> <p>※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을 투자실적에 포함</p>	구 분	3% 이상	3.0% 미만 2.5% 이상	2.5% 미만 2.0% 이상	2.0% 미만 1.5% 이상	1.5% 미만 1.0% 이상	1.0% 미만	점수	7.0	6.8	6.6	6.4	6.2	6.0																						
구 분	3% 이상	3.0% 미만 2.5% 이상	2.5% 미만 2.0% 이상	2.0% 미만 1.5% 이상	1.5% 미만 1.0% 이상	1.0% 미만																																
점수	7.0	6.8	6.6	6.4	6.2	6.0																																

평가 항목	평가 요소	배점	점수 계산 방법												
바. 업무 중첩도 (5)	(1)상주 감리원	3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책임감리원</th> <th>보조감리원</th> </tr> </thead> <tbody> <tr> <td>점수</td> <td>2</td> <td>1</td> </tr> </tbody> </table> <p>- 다른 공사현장(기술지원감리원 포함)에 중복배치 시 : 해당용역 평가대상에서 실격처리</p> <p>※ 다른 공사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이 해당 감리용역 공사기간내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은 경우 중복배치에서 제외(이 경우 다른 공사현장의 발주부서장이 해당 감리용역 평가기준일 이전에 확정된 배치계획에 따라 확인시 인정, 또한 발주부서가 공사 및 감리용역 발주 여건을 고려하여 중복배치 제외기간을 정할 수 있다)</p>	구 분	책임감리원	보조감리원	점수	2	1						
	구 분	책임감리원	보조감리원												
점수	2	1													
(2)기술 지원 감리원	2	<p>○ 기술지원감리원 (2점)</p> <p>- 다른 공사현장의 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 시 : 해당용역 평가대상에서 실격처리</p> <p>- 다른 공사현장의 기술지원감리원으로 10개 이상 중복배치 시 : 0점</p>													
사. 교체빈도 (10)	(1)감리 전문 회사	5	<p>○ 감리전문회사 소속 전체 감리원 중 현장배치 된 감리원수 및 시행규칙 제61조 제4항에서 규정한 배치계획에 의한 감리원수에 대한 최근 1년간 감리원으로 참여한 감리용역에서 교체건수의 합계의 비율 (교체빈도율)</p> <p>※ 기술지원감리원의 경우 교체 5건마다 1건으로 계산</p> <table border="1"> <thead> <tr> <th>교체빈도율 (%)</th> <th>5%미만</th> <th>5%이상 10%미만</th> <th>10%이상 15%미만</th> <th>15%이상 20%미만</th> <th>20%이상</th> </tr> </thead> <tbody> <tr> <td>점수</td> <td>5</td> <td>4.5</td> <td>4</td> <td>3</td> <td>0</td> </tr> </tbody> </table> <p>- 교체빈도율이 5% 미만일 경우 : 배점(5.0)-(최근 1년간 교체건수 / 최근 1년간 배치감리원수)×5.0</p>	교체빈도율 (%)	5%미만	5%이상 10%미만	10%이상 15%미만	15%이상 20%미만	20%이상	점수	5	4.5	4	3	0
	교체빈도율 (%)	5%미만	5%이상 10%미만	10%이상 15%미만	15%이상 20%미만	20%이상									
점수	5	4.5	4	3	0										
(2)참여 감리원	5	<p>○ 참여감리원 중 최근 1년간 상주감리원으로 현장배치 및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 제4항의 배치계획에 의한 감리용역에서의 교체 1회당 0.25점씩 감점(기술지원감리원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p>													

다.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 가점과 감점을 상제한 점수는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평가 항목	평가요소	점 수 계 산 방 법								
가점	공사비 절감기여 감리원 (0.2점)	<p>- 공사비 절감 감리원</p> <p>○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내(입찰 공고일 기준) 발주청(인·허가, 승인기관은 제외)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제안하여 발주청으로부터 공사비 절감을 인정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가점 부여</p> <p>- 상주감리원 : 0.1점 × 가중치</p> <p>- 기술지원감리원 : 0.1점 × 가중치</p> <p>&lt;절감금액에 따른 가중치&gt;</p> <table border="1" data-bbox="435 772 1385 900"> <tr> <td>가중치</td> <td>1.0</td> <td>0.8</td> <td>0.5</td> </tr> <tr> <td>절감금액</td> <td>10억 이상</td> <td>10억 미만 ~ 5억 이상</td> <td>5억 미만 ~ 1억 이상</td> </tr> </table> <p>* 1인이 2건 이상 공사비 절감실적이 있을 경우 절감금액은 합산</p> <p>* 해당 감리용역과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경우 적용</p> <p>* 상주감리원 및 기술지원감리원 각각 1인에 한하여 적용</p> <p>* 절감금액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p>	가중치	1.0	0.8	0.5	절감금액	10억 이상	10억 미만 ~ 5억 이상	5억 미만 ~ 1억 이상
가중치	1.0	0.8	0.5							
절감금액	10억 이상	10억 미만 ~ 5억 이상	5억 미만 ~ 1억 이상							
감점	부패행위 관련자 (10점)	<p>○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내 해당 발주부서에서 부패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감리원과 부패당시 그 감리원이 소속된 감리전문회사는 감점(감리원 및 감리전문회사의 감점처분 대상일은 감리원의 형사처벌일 또는 행정처분일이며, 동일 건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선행된 처벌(분)일을 적용함)</p> <p>○ 감점적용 점수</p> <p>-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3%를 초과하거나 10억원 초과 : 5점 감점</p> <p>-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를 초과하거나 3% 이하 또는 3억원 초과하거나 10억원 이하 : 3점 감점</p> <p>-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 이하거나 3억원 이하 : 1점 감점</p> <p>&lt;부패행위&gt;</p> <p>감리원이 책임(시공, 검측)감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거나 발주부서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p> <p>※ 위 내용의 평가는 처분기관(수요기관 포함)에 조회하여 통보된 자료에 따라 평가함</p>								